

자동차 [] 이전
[] 말소 등록시 자동차세(소유)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(양도인 · 말소등록인)	①성명(법인명)	②주민(법인)등록번호	
	③주소(영업소)	④연락처	
신고내용	⑤자동차등록번호	⑥차종	
	⑦배기량(적재정량·승차인원·총중량)	⑧이전(말소)등록일	⑨세액

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기분(期分)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위임장

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해당기분(期分)의 자동차세의 세액의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 (서명 또는 인)

위임 받는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위임자와의 관계
	주소		전화번호

※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접수증(이전·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서)

신고인(대리인)	접수연월일	신고내용	접수번호	
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.			접수자	접수일
			(서명 또는 인)	

작성 방법

□ 신고인(양도인·말소등록인)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주소(영업소):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□ 신고내용

- ⑤ 자동차등록번호: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⑥ 차종: 자동차등록증의 차종(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, 이륜자동차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⑦ 배기량: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(cc), 적재정량(Kg), 승차인원(명), 총중량(kg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⑧ 이전(말소)등록일: 자동차를 이전(말소)등록한 날을 적습니다.
- ⑨ 세액: 이전(말소)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해당기분의 자동차세 세액

□ 위임장: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신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을 말하며,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,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.

□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